

#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9
----------	---------

제안년월일 : 2025년 6월 1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2조의 정비대상인 ‘심신장애’ 용어는 종전 일괄개정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건강상 이유’가 아닌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함.
- 안 제3조의 정비대상인 ‘일반인’은 장애 차별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 정비하는 안 제2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정비하는 안으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일반인’을 ‘비장애인’으로 정비하는 안 제3조를 삭제함.

##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건강상 이유’ 를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를 안 제3조부터 제5조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생 략)</p> <p>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u>건강상 이유</u>”로 한다.</p> <p>제3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u>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제5조제1항 중 “일반인”을 “<u>비장애인</u>”로 한다.</p> <p>제4조~제6조 (생 략)</p>	<p>제1조(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u>장기간의 심신쇠약</u>”으로 한다.</p> <p>&lt;삭제&gt;</p> <p>제3조~제5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p>

##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 속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가”를 “지체장애인이”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기관란 제2호 중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을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기관란 제3호 중 “부랑자·결인·정신이상자·요보호여성”을 “부랑자·결인·정신장애인·요보호여성”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제2호 감면대상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